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결정 번호 항소 심판 결정에 따른 **(원고의) (고용주의)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가 완전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고용 안전법은 판결의 통보일 또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삼십 (30)일 이내에 서면 항소가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의 최종 결정이 본부의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C. Gen. Stat. § 96-15(b)(2). 위원회는 04 N.C. Admin. 24A .0105(26)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항소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고용안전법에서 이용되었듯, 실사를 실시할 때에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실사"란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행하도록 기대되고 행해지는 조심성, 예방, 주의,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1).

[법조인 또는 서기에게 주는 주의 사항: 추가 3 일은 판결자 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권은 우편 발송일로부터 30 일 후에 만료됩니다.]

판결자 결정 서류 번호가 일 우편 발송 되었습니다. 결정에 대한 항소권은 삼십 (30)일 이후인 일에 만료됩니다. N.C. Gen. Stat. § 96-15(b)(2).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적 주 휴일인 경우 해당 기간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위원회는 항소 심판이 결정에서 (원고의) (고용주의)항소 적시성과 관련하여 사실의 발견 및 법의 결론을 채택합니다. (원고) (고용주)는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데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였고,이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실사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위원회는 항소 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Stat. § 96-1 이하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며,결과적 결정은 법률 및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3 페이지 중 2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고용주의)마지막 항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판결자 결정 서류 번호 는 **최종적입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 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3 페이지 중 3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